

●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82호

재정경제부고시 제2026-64호(2026. 2. 25. 시행)에 따른 다음의 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. 2. 25. ~ 2026. 6. 24.(4개월)에서 2026. 2. 25. ~ 2026. 8. 4. (5개월 11일)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7일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

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

1. 부과 내용

가. 부과 대상 공급국 : 독일, 프랑스, 노르웨이 및 스웨덴

나. 부과 대상 물품 :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

(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)

○ 관세품목분류(HSK) : 3904.10.0000

○ 다만, 현탁중합(Suspension Polymerization, 분산 안정제를 통해 비교적 큰 단량체 방울을 물 속에 분산시켜 중합하는 방식)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(입자크기 100~180 μ m)은 제외한다.

다.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 덤핑방지 관세율(%)
독일	1. 비놀릿(Westlake Vinnolit GmbH & Co. KG) 및 그 관계사	42.81
	2. 그 밖의 공급자	30.60
프랑스	1. 켈 원(KEM ONE) 및 그 관계사	37.68
	2. 그 밖의 공급자	37.68
노르 웨이	1. 이노빈 유럽(Inovyn Europe Limited) 및 그 관계사	25.79
	2. 그 밖의 공급자	25.79
스웨덴	1. 이노빈 트레이드(Inovyn Trade Services SA) 및 그 관계사	28.15
	2. 그 밖의 공급자	28.15

라. 부과기간 : (당초) 2026. 2. 25. ~ 2026. 6. 24. (4개월)

(변경) 2026. 2. 25. ~ 2026. 8. 4. (5개월 11일)

마. 기타 행정사항

○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

2. 부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